

영등포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0.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8호로 2017년 10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광고사업
계약 체결기한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도로명 주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명확화(안 제8조제1항)
- 나. 광고사업계약의 체결기한 상위법령과 일치(안 제13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 요구 사항으로,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안 제8조제1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 기관의 범위를 조례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없도록 법제처의 수정 요구안으로 보완하였고
 - 안 제13조제1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광고사업계약의 체결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하고 조문을 일부 수정함.

-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09.7.1.]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2017.7.26.>